

하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 계약서(관리기업용) 신규조문대비표

변경전	변경후	비고
<p>용어 변경(계약서 모든 조항) 갑 을</p>	<p>용어 변경(계약서 모든 조항) 을 갑</p>	<p>갑→을 을→갑</p>
<p>_____ (이하 “갑” 이라 함) 와 (주)하나은행(이하 “을” 이라 함)은 하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,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기타 관련된 업무의 약관을 적용한다.</p>	<p>(주)하나은행(_____ 지정, 이하 “갑” 이라 함)과 _____ (이하 “을” 이라 함)은 하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,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기타 관련된 업무의 약관을 적용한다.</p>	
<p>제 4 조(서비스 신청 및 변경) ① “갑”은 서비스의 신규 신청 및 변경 시 “하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 이용신청서(관리기업용)”와 “하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 국외계좌 등록 신청서(관리기업용)”를 작성하고, “피관리기업”이 “국외은행”에 신청한 신청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.</p>	<p>제 4 조(서비스 신청 및 변경) ① “을”은 서비스의 신규 신청 및 변경 시 부속서류 1[하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 이용신청서(관리기업용)]와 부속서류 2[하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 국외계좌 등록 신청서(관리기업용)]를 작성하고, “피관리기업”이 “국외은행”에 신청한 신청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.</p>	<p>갑→을 을→갑 부속서류 명시</p>
<p>제 10 조(면책) “을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②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“을”의 전산장애 등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의 경우</p>	<p>제 10 조(면책) “갑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② “갑”의 귀책사유가 없는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“갑” 또는 “국외은행”의 전산장애 등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의 경우</p>	<p>을→갑 “일체의” 삭제 “귀책사유가 없는” 추가</p>
<p>제 12 조(관할법원)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,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(_____)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</p>	<p>제 12 조(관할법원)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</p>	<p>관할법원을 법이 정하는 법원으로 함.</p>